

의안번호	제 95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저금리 기조 및 금리 변동성 확대 대응과 기금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 이자수익금 사용 방안 강구(안 제4조)

## 2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 범위 조정(안 제4조)
  -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 지출 제한 삭제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관리.운용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.</p> <p>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<u>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관리.운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② ----- <u>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 -----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